

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2]

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
급수인구(명)	수질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(개)
5,000 미만	1
5,000 이상 - 50,000 미만	급수인구 5,000명당 1
50,000 이상 - 100,000 미만	급수인구 7,000명당 1 + 2
100,000 이상 - 500,000 미만	급수인구 8,000명당 1 + 4
500,000 이상 - 1,000,000 미만	급수인구 15,000명당 1 + 33
1,000,000 이상	급수인구 30,000명당 1 + 66

비고 :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.